

수원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23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옥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이상호, 김요한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C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D 대 203㎡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으로 2017. 10. 20. 1억 원, 2017. 10. 23.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원고의 요구로 잔금지급기일을 2018. 1. 20.에서 2018. 2. 19.로 연기하여 주었고, 2018. 4. 13.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8. 4. 19.까지만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C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0. 15. 위 가등기에 기하여 E 앞으로 2018.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6. 5. C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6205)을 제기하였고, 2019. 4. 23.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C는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14.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C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0727]1).

마. 한편, C는 2018. 4. 24.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피고에게 현금 25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4,500,000원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4. 26.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C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고, 사해행위의 존재 역시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이때의 사해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5. 위 확정판결의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C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C의 사해의사를 그 무렵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2018. 4. 24. 당시 그와 같은 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위 각 피보전채권 중에서 손해배상채권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E에 이전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8. 10. 15.에 발생하였고, 원상회복청구권은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C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9. 1. 10.에 발생하였다.

2) 원고는 C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E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C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역시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C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점(2018. 4. 24.)은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시점(2018. 5. 30.)보다 이전인 점, ③ 원고는 C가 2018. 4. 24.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6656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2018. 5. 30.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원고의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각 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8. 4. 24. 당시 C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2,8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2,554,500,000원(=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무 600,000,000원 + 전세권자 F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 200,000,000원 + 주식회사 G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750,000,000원 + H은행 대출채무 4,500,000원)으로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245,500,000원 더 많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C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C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가 피고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손지연, 판사 박성덕

1) 위 판결의 주된 취지는 ‘C가 2018. 10. 15. E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 9.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9. 1. 10. C에게 송달됨에 따라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C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반환하고, 계약금과 같은 금액인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